

[별지 제30호서식]

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	
선거비용제한액	원
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	원
<p>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「정치자금법」 제34조제4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○○이(가)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선거 후보자(예비후보자) ○○○ (인)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○○○ (인)</p> <p>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</p>	
<p>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후보자·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을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약정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가 합니다.	